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06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김정재·서명옥·김성원

박충권 · 김기현 · 조지연

박덕흠 • 이인선 • 강명구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법인 (이하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를 두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등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각종 기업등의 공장이나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의 인프라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국 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등) ①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u>2025년</u> 12	<u>2030년</u> -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로서 공장의 부지를 <u>2025년</u> 12	<u>2030년</u> -
월 31일까지 보유하고 <u>2025년</u>	<u>2030</u>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u>년</u>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8년</u> 12월 31일)까지 사업을	<u>2033년</u>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	
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 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 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 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 ~ ᠑ (현행과 같음)
레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u>2030년</u>
<u>2030년</u>
<u>2030년</u>
<u>2033년</u>

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